

제115회 제2차정책회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산 업 건 설 위 원 회

# [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04. 11. 22
- 제출자 : 거창군수

## II. 일반회계 총괄

###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예산액	2005년도 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합 계	129,503,758	144,588,268	15,084,510	11.6
지방세	9,970,036	10,924,312	954,276	9.6
세외수입	11,661,105	7,755,840	△3,905,265	△33.5
지방교부세	61,736,000	83,200,000	21,464,000	34.8
조정교부금	3,435,000	3,400,000	△35,000	△1.0
국고보조금	20,701,188	29,890,245	9,189,057	44.4
도비보조금	9,607,271	9,417,871	△189,400	△2.0
지방양여금	12,393,158	0	△12,393,158	

○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1.6%인 150억 8,451만원 증액된 총1,445억 8,827만원으로 예산안 제출됨.

- 지방양여금제도 폐지로 국가균형특별회계로 95억 8,067만원이 보조되었지만 실제 국고보조금이 391백만원, 양여금 차액 28억 1,249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도보다 국고보조금이 32억원 감소되었으며, 그 동안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지원되던 양여금이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도로 사업예산이 큰폭으로 감소되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검토됨.
- 전년도에 비하여 도비보조금은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도지사 거창군순방 미실시에 따른 건의사업비가 전년에 비하여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각 부서에서는 도의 추경예산 편성시 도비보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예산액	2005년도 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합 계	129,503,758	144,588,268	15,084,510	11.6
의 회	577,408	696,426	119,018	20.6
총무위원회 소관	70,682,866	81,802,640	11,119,774	15.7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8,243,484	62,089,202	3,845,718	6.6
농 정 과	10,006,727	18,318,151	8,311,424	83.1
경 제 과	1,713,972	3,299,045	1,585,073	92.5
환경녹지과	12,941,741	12,232,543	△709,198	△5.5
건 설 과	24,891,460	20,123,968	△4,767,492	△19.1
지역개발과	5,686,823	1,474,822	△4,212,001	△74.1
농업기술센터	1,900,004	1,648,033	△251,971	△13.3
상하수도사업소	1,102,757	4,992,640	3,944,883	376.5

- 농정과, 경제과, 수도사업소는 크게 증가한 반면,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건설과, 지역개발과는 감액편성 된 것으로 나타났음.
  - 농정과는 FTA관련 사업비, 경제과는 시장현대화와 유류세액보조금,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운영에 따른 전출금이 증가한 것임.
  - 건설과는 양여금폐지로 도로사업비가 감소, 지역개발과는 도시계획도로 관련 예산이 미반영 되었기 때문임.
- 세출예산편성시 계획적,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증장기지방 재정계획과 연계하여야 하며, 10억원이상 투자사업비에 대한 투융자심의, 정수물품의 정수승인후 예산계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승인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각종 행사 및 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명확한 기준없이 성과별 2~4만원으로 상이하게 계상되어 교육참석자의 실비보상에 대한 상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향후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계상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Ⅲ.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 [농정과 소관사항]

#### 1. 일반회계

##### ○ 세 입(주요부분)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예산액	2005년도 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합 계	5,902,685	11,276,485	5,373,800	91.0
도 축 세	151,800	213,500	61,700	40.6
농지처분이행강제금	0	20,000	20,000	-
국고보조금	5,195,217	7,365,357	2,170,140	41.8
군특회계보조금	0	1,528,470	1,528,470	-
도비보조금	555,668	2,149,158	1,593,490	186.8

① 농정과 소관 국도비 지원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한 것은 FTA 기금 과수지원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임.

우리 군의 주요생산품목인 사과, 포도등에 대하여 FTA기금 과수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 된 것은 집행부의 시의적절한 대처와 중앙 및 도 관계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와 노력의 결과로 평가됨.

② 농지처분 강제이행금은 소유자가 취득한 농지를 5년간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지 않을시 처분명령을 하고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매년 당해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에는 편성치 아니한 것을 금년도 편성한 사유와, 현재까지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예산액	2005년도 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일반회계	10,006,727	18,318,151	8,311,424	83.0

① 대도시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임차료 275,000천원 (p318)

- 동 사업은 과거에도 사업부진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는 사업으로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는 주도면밀한 현장분석과 유경험자의 운영기법이 도입되어

야 할 것인 바,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예치된 서울 농산물직판장 임차료 회수금액 225백만원과 같이 투자할 것인지와 시설위치, 운영주체, 설치시기 등 집행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② 농업경영인 선진농업기술견학 해외연수 36,000천원(p319)

- 전년도에는 해외연수에 따른 예산을 37명에 대하여 70%를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30명 60%로 변경함에 따라 전년보다 15,800천원 적게 계상됨. 부담비율을 삭감한 것은 임업후계자 연수와 지원비율을 동일하게 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이며, 앞으로 연수대상자 수를 읍2, 면당1명 정도로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③ 거창농협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사업 300,000천원(p327)

- 거창쌀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시설개선코자하는 사업으로 농정사업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동 지원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바, 농협의 경제력과 어려운 여건의 농민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검토됨.

④ 브랜드육 전문점 설치(1개소) 1,435,000천원(p329)

- 애우, 애도니 판매를 위한 전문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대상지, 운영주체등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검토의견 ①항의 대도시 농특산물전시장 설치 사업과 연계추진시 사업규모의 확대로 투자성과가 배가될 것으로 검토됨.

⑤ 도축장 소HACCP 시설설치사업 지원 125,000천원(p333)

- 동 건물은 제113회 임시회에서 협의한 건물로 시설미설치로 소도축이 불가함에 따라 지역축산농민 및 식육업자들의 편익도모와 도축세의 징수를 감안하면 시설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음.

그 동안 소 및 돼지에 대한 도축세의 50%를 감면하여 오던 것을 2004.9.30부터 폐지함에 따라 2005년도 도축세는 전년보다 61,700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짐.

특히 위생처리시설비의 전부를 군비로 지원해야 할 것을 지원사업비의 65%를 국,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돋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다만, 동 사업비를 보조할 경우 기업체의 부담비율이상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조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⑥ 정착농원 계분건조장 지원사업 80,000천원(p335)

- 계분건조장 설치에 대한 지원 필요성, 지원대상자 등 지원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동 사업도 필요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 민간자본보조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⑦ 거창사과테마파크조성사업 596,220천원(p337)

- 사과테마파크조성사업은 제114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62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05년도 확보된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04.11월 업무보고시 사업내용을 부지확보, 전시장 및 박물관건립 등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이의 추진을 위하여는 지방재정법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지방재정투·융자 심의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득한 후 예산편성하여야 하나 이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예산의 사전절차이행 원칙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정과에서는 사과테마파크사업과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에 대하여 도시 계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는 것과 토지등의 수용권은 인정되나 별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및 절차이행, 농지전용등 관련절차 이행에 1년이상 소요됨에 따라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에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는 받아야 함. (미 이행시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 적용)

⑧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4,269,650천원(p337)

-(2005년도 사업비에 대한 세부투자내역 자료제출 요구함 - 의원별 배부)  
동 사업은 개방에 따른 직접피해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중앙 지원사업으로 2010년까지 1,367억 67백만원을 투자할 대규모 사업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시는 단위사업별로 구분 편성하여야 할 것임.

⑨ 기타사항

- 농정사업중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 산지거점 유통센터설치사업에 대하여 계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는 계속 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 2. 특별회계(세입·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전년도 예산액	2005예산액	증 감	
			증 액	비율(%)
농업발전기금	4,694,515	5,724,353	1,029,838	21.9

○ 농업발전기금의 예산규모가 21.9% 증가한 것은 전년도 일반회계로부터의 농업발전기금 전입금(10억원)과 2005년도 체납금 회수수입(35백만원)을 계상 하였기 때문임.

- 농업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을 100억원으로 매년 적립중인 것으로 2005년말에는 기금적립금 총액이 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음.

농업발전기금은 현재까지 적립목적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차보전의 투자 계획이 없었으나, 적립금 규모가 50억원 이상이 되면 재해보상과 과수농가 보험제도를 도입키로 보고하였는 바, 2005년도에는 적립금이 50억원이상 되므로 동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경제과 소관사항]

### 1. 일반회계

#### ○ 세 입(주요부분)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예산액	2005년도 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합 계	1,775,338	2,352,572	577,234	32.5
주 행 세	1,700,000	1,706,856	6,856	0.4
국고보조금	75,338	49,716	△25,622	△34.0
균특회계보조금	0	595,000	595,000	신규
도비보조금	0	1,000	1,000	신규

- ①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인 것이며, 국고보조금 삭감사유는 고용촉진 훈련비를 삭감하였기 때문인 것임.

####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예산액	2005년도 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일반회계	1,713,972	3,299,045	1,585,073	92.5

#### ① 고용촉진훈련 59,250천원(p345)

- 동 사업은 정보처리, 조리, 이·미용, 자동차정비 등의 분야에 3개월간 교육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년실업대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최근 젊은층의 취업난을 감안할 때 확대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전년도 예산액 91,140천원보다 31,890천원 감액된 59,250천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②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893,000천원(p347)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 동안의 사업추진 상황과 균특회계 예산으로 배정된 사업비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③ 공공근로사업 예산 미반영

-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대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공공근로사업('04년 245백만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유 설명이 필요함.

## 2. 특별회계(세입·세출)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예산액	2005년도 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1,439,700	1,363,910	△65,790	△4.6
주차장관리특별회계	521,765	640,207	118,442	22.7

### <농공단지특별회계>

#### ① 기업유치 민간 및 유공자 포상 3,000천원(p464)

- 거창군내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민간인과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1인당 50만원)하는 것으로 2004년도는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동 제도는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거창군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거창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촉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는 기업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하여는 포상금(현 50만원)을 대폭 상향조정 하고 유공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특전 등의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②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등 입지·시설 보조금 75,000천원(p464)

- 국내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정일 현재 산업단지 또는 농공 단지의 분양실적이 70%이하이거나 분양가능면적이 최소 1만평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거창군은 국내기업투자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음에도 예산에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차장관리특별회계>

- 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증액편성된 것은 순세계잉여금과 과태료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주차장법 제21조의2항과 거창군주차장관리조례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규정한 사항중 도시계획세에 대하여는 10%의 금액을 부담토록 되어 있음에도 그 동안 부담이 없는 것으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2004년도 도시계획세 646백만원)

편성된 세출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은 10.9%에 불과한 반면, 경상예산이 전체의 26.7%, 예비비가 6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주차장관리사업에 대한 투자비의 비중이 저조한 것으로 거창군의 교통여건을 감안하면 주차

장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예비비로 계속이월할 것이 아니라 투자방안을 마련하여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 ② 견인대행업체 손실보조 10,000천원(p473)

-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견인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대하여 손실보조하는 것으로 현재 대행업체가 보유한 차량은 2대이며, 2004년 현재까지 견인된 차량은 약400대로써 전년도의 215대에 비하여는 실적이 크게 늘어났음.
- 견인차량회사를 설립한 것은 불법주정차 견인보다는 거창관내 고장 또는 사고차량의 견인을 위한 것으로 대행업체로 선정된 것도 업계의 이익추구를 위한 것으로 조례의 근거에 의거 적정수준의 견인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법률이나 조례, 협약조건 등의 지원근거도 없이 매년 1천만원의 자금보조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견인차량에 대한 보관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의 시행으로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며, 견인대행업체의 손실이 계속 발생할 시 견인대행수수료를 상향조정 하는 방안으로 대처해 나가는 등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

## [환경녹지과 소관사항]

### 1. 일반회계

#### ○ 세 입(주요부분)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예산액	2005년도 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합 계	4,342,773	3,883,043	△459,730	△10.6
수수료수입	507,000	512,000	5,000	0.4
징수교부금	22,000	22,000	0	0
과태료수입	75,000	74,000	△1,000	△1.3
국고보조금	1,838,483	1,826,283	△12,200	△0.7
도비보조금	1,900,290	1,449,560	△450,730	△23.7

- ① 환경녹지과소관 세입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된 것은 산림분야의 도비 보조금이 전년보다 23.4%인 4억 4,256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향후 도비보조금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시책개발과 도비보조 사업발굴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됨.

####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예산액	2005년도 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일반회계	12,941,741	12,232,543	△709,198	△5.5
환경개선관리	4,674,892	2,994,923	△1,679,969	△35.9
산림자원개발	8,266,849	9,237,620	970,771	10.5

- ① 정수물품 미승인 물품 예산계상 :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7천만원(p357), 산불진화 차량 3천만원(p370), 산불예방 무전기 21,260천원(p370) 지게차 37,000천원(p357)
- 지방재정법 제95조,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수승인 받지 아니하고 계상한 것으로 예산의 사전절차 이

행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정수승인을 득한 후 예산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② **산불진화복 30,000천원, 기타피복비 4,970천원(p361)**

- 산불진화복 지급대상중 읍면감시원을 120명으로 하였으나, 일시사역인부임 예산편성 내역은 96명(p366)으로 24명이 적은 것으로 검토되며, 산림부서의 피복비는 매년 구입(2003년 460만원, 2004년 420만원)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방재부서, 가축방역부서등 청내 기타 부서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이 제기되므로 기타피복비 예산을 매년편성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③ **임업후계자 산림시책추진 선진지 견학 21,000천원(p362)**

- 임업후계자 선진지 견학은 거창군내 임업후계자로 지정된 자를 대상으로 임업 선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규시책으로 관내 임업후계자는 13명이 있음. 임업후계자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를 1인당 350만원으로 정한 것은 농업경영인(2백만원), FTA지원사업 해외연수(3백만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검토됨.  
관내 임업후계자로 지정된 자가 13명 뿐인데도 10명을 대상인원으로 한 것은 수혜비중이 많은 것으로 검토되며, 임업후계자의 규모를 감안할 때 해외연수는 군 자체보다는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④ **석재산업육성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100,000천원(p365)**

- 거창화강석의 특화를 위하여 2004.4.12 중소기업청의 지역향토산업으로 지정 받아 2006년부터 5년간 75억원의 사업비투입을 위하여 포럼활동을 추진중에 있음.  
동 사업비는 채석장주변 주민편의와 수송장비 진입편의를 위한 채석장 진입로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지원대상업체, 사업 내용, 지원필요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⑤ **생활주변 나무심기 2,410,000천원(p372), 30,000천원(p373)**

- 2005년도의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무려 916,700천원 증액된 것으로 도 도로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것에 비하여 군비부담이 과도한 것으로 검토됨.  
투자사업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10억원 이상의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사업비성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전 사업타당성에 대한 투융자심의를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 되어 있음.

동 사업은 푸른경남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계속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투자계획에는 총 1,210백만원(도비363, 군비847)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매년 사업타당성에 대한 투융자심의를 생략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적정규모에 대하여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검토됨.

※투융자사업심사지침에 의하면 투자사업의 심사범위로 사업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말하며,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연도별로 나누어서 발주하는 각각의 사업을 심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도 내용이 성격이 상호연결되며, 상호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투융자사업심사지침에 의한 심사대상으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투융자심의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 p373의 민간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0천원 편성된 것은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과 내용과 동일하며, 도비보조사업임에도 도비부담 없이 군비만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조림사업은 거창군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림대장을 작성 및 전산화 작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⑥ **읍민생활공원조성사업 1,500,000천원(p374)**

**(계속비사업) 2,000,000천원(p479)**

- 변경신청된 읍민생활공원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기 승인된 것보다 총사업비는 15억 3천만원 증액한 85억3천만원으로 하고, 도비보조금은 당초의 35억원보다 15억원 감액된 20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군비부담액이 당초승인보다 무려 30억 3천만원 증액된 65억 3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음.
- 계속비사업은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예산으로 당초 의결시 재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도비보조금이 15억원이나 감액된 것에 대한 설명과 당초 계속사업비 신청시 道로부터 35억원 지원받겠다는 근거는 무엇이었는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p374의 사업비 15억원은 당초 계속비조서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변경신청된 읍민생활공원조성사업의 계속비사업 승인시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임.
- 기 승인된 사업에 비하여 총사업비, 사업비 조달방안과 군비부담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건설과 소관사항]

### 1. 일반회계

#### ○ 세 입(주요부분)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예산액	2005년도 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합 계	17,829,600	9,465,367	△ 8,364,233	△ 46.9
징수교부금(하천,도로)	20,500	20,500	0	0
국고보조금	4,381,200	2,602,165	△ 1,779,035	△ 40.6
국가균형특별회계	0	5,173,400	5,173,400	-
지방양여금	10,834,958	0	△ 10,834,958	-
도비보조금	2,592,942	1,669,302	△ 923,640	△ 35.6

① 건설과소관 세입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46.9%인 83억 64백만원 감소된 것으로 다른 부서에 비하여 큰폭의 감소를 시현하였음.

- 이는 농업기반조성사업비 감소와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것에 기인함.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국가균형특별회계가 대체되어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는 도로사업은 제외되어 있어 계획된 군도와 농어촌도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국도비 보조금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됨.

####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예산액	2005년도 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일반회계	24,891,460	20,123,968	△ 4,767,492	△ 19.1
농업기반조성	8,447,827	5,453,650	△ 2,994,177	△ 35.4
건설행정	2,933,874	5,450,336	2,516,462	85.8
도로관리	11,914,741	6,730,000	△ 5,184,741	△ 43.5
하천 및 재난예방	1,595,018	2,489,982	894,964	56.1

① **세출예산 총괄**

- 건설행정 분야의 세출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04년도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합천댐정비사업(24억 7,680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하천 및 재난예방분야의 증가사유는 하도준설사업과 하천유지관리 예산이 신설되었기 때문임.  
반면 농업기반조성사업은 대규모경지정리사업의 마무리로, 도로관리부문은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② **농업기반시설사업비 4,421,010천원(p377)**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투자사업의 적정성, 투자의 효과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는 정주권사업, 경지정리사업처럼 대상지를 명확히 표기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것으로써 향후 예산편성시 주요사업장에 대한 사업대상지를 표기토록 개선을 요구하며, 2005년도 예산편성된 사업에 대한 사업별 대상지 및 예산의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함.(의원별 배부)

③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16,000천원(p379)**

- 국고보조사업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계상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의 사업비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에 편성한 사유와 이를 군에서 직접시행하지 아니하고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시행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④ **합천댐정비사업 2,476,800천원(p382)**

- 댐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읍면별 사업별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함(의원별 자료배부)

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420,646천원(p384)**

- 동 사업은 전년도에는 양여금사업으로 예산액이 113억 52백만원중 군비가 16억 23백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양여금제도 폐지로 인하여 2005년도에는 사업비 64억 2천만원 전액을 군비로 충당함에 따라 군비부담이 우리군의 재정운용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검토됨.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사업비가 대폭 감소함에 따른 기존사업의 차질여부,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할 신규개설사업, 향후 사업비확보를 대책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⑥ 하도준설사업 250,000천원(p386)

- 하도준설은 수해예방과 효율적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그러나 거창지역은 마사토가 풍부한 지역으로 하천에는 양질의 모래가 퇴적된 지역이 많아 준설사업시행 방법과 준설된 토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로 거창수승대사업소에서는 퇴적모래 준설을 위하여 사업비를 투자하지 아니하고 준설토에 대하여 준설토 매각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한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 사전 준설지역에 대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시행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⑦ 업무추진비 2,000천원(p380)

- 건설행정은 농업기반조성, 도로건설, 하천관리, 방재업무 등 주민의 재산 및 생명과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주요부서로서 많은 예산사업이 수반됨에 따라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는 중앙 및 도의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도 다른 실과에 비하여 오히려 더 적은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향후 건설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는 증액편성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 [지역개발과 소관사항]

### 1. 일반회계

#### ○ 세 입(주요부분)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예산액	2005년도 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도비보조금	1,500,000	0	0	-

① 지역개발소관 금년도 국도비보조사업비등 세입예산액이 계상되지 아니함.

- 전년도의 도비 보조금은 도지사 시군순방시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숙원 사업으로 도비를 보조받았으나 금년도는 거창지역에 대한 도지사순방이 없어 보조금지원 건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도지사의 거창순방이 계획되지 아니하면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 건의사업을 채택하여 도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12월 현재 도내 13개군에 대하여 시군순방 실시하였으며, 순방과정에서 시군별 건의사업중 56건에 대하여 1,160억원의 재정지원을 답변한 것으로 파악됨.

- 과의 소관업무중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점검과 일체정비작업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과태료에 대한 세입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예산액	2005년도 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일반회계	5,686,823	1,474,822	△4,212,001	△74.1

① 장기비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 971,530천원(p392)

- 동 사업비는 금년도 신설된 예산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매입대상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②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예산 미반영 사유설명 요구

- 2004.11월 업무보고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예산부족으로 추진에 곤란한 사업이 대평도시계획도로등 5건이 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조우회도로는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개설 건의가 계속됨에도 금년도 도시계획도로사업개설분야에 준비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특별회계(세입·세출)**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예산액	2005년도 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주택사업특별회계	50,066	53,098	3,032	6.1

① 삼창국민주택과 '87 재해주택 융자금 이자 및 원금회수로써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 1. 일반회계

#### ○ 세 입(주요부분)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예산액	2005년도 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일반회계	454,769	319,589	△135,180	△29.7
국고보조금	404,126	149,981	△254,145	△62.9
국가균형특별회계	0	25,000	25,000	-
도비보조금	50,643	144,608	93,965	185.5

① 농업기술센터소관 금년도 세입예산액은 도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비 감소로 전년도에 비하여 29.7%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성격상 국비사업은 대부분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접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정의 어려운 현실과 각종 연구사업의 실현을 위하여는 국도비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줄어든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농정과에서는 한·칠레간 FTA 타결에 맞추어 국비지원방안을 마련 도와 협력하여 농림부에 지원안을 제출하여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을 유치함.

####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예산액	2005년도 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일반회계	1,900,004	1,648,033	△251,971	△13.3

#### ① 일반운영비 165,557천원(p398)

- 일반운영비 계상액중 운영수당은 전년도의 947만원에 비하여 116%, 연료비는 1,125만원 보다 160%, 시설장비유지는 1,265만원보다 122%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 바, 다른 부문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②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국도비사업) 422,266천원(p412)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중 자체사업(p417 105,400천원)은 총사업비중 50%를 자부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군의 민간자본사업에 대하여는 일정비율 자부담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는 일정비율에 대하여는 자부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도비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과 자체사업중 삼지구엽초 임간실증시험재배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③ 민간자본이전 국.도비 123,416천원(p404), 자체사업 104,500천원(p417)

- 예산심의를 위하여는 가능한 사업대상지를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편성된 사업은 대상 수가 1개소인 것은 사업대상지를 명확히 표기가 가능함에도 이를 1개소로 표기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민간자본이전 사업장별 세부내역 자료제출요구 - 의원별 배부)

④ 친환경 종이멸칭벼 기계이양기 15,000천원(p408)

- 지방재정법 제95조,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수승인 받지 아니하고 계상한 것으로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정수승인을 득한 후 예산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⑤ 사과포장관리 인건비 5,220천원(p409)

- 사과는 전년도에도 수확실적이 있음에도 수확에 따른 인건비를 별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수확선별은 자체인력으로 가능하며, 필요시 상인에게 포전거래도 가능한 것으로 금년도 1,620천원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 자체관리하는 사과, 포도, 딸기, 감자 등의 식재현황과 전년도 및 금년도의 생산과 판매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⑥ 청사관리인부임 16,159천원(p397)

- 청사관리 인부임 내역중 상여금을 2명으로 계상하였는 바, 청사관리인부는 1명인데 상여금 계산에만 2명으로 한 것은 착오로 과다계상된 것으로 검토됨 (과다계상액 2,510천원)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

1. 일반회계

○ 세 입(주요부분)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예산액	2005년도 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도비보조금	0	270,000	270,000	-

- ① 상수도사업소의 금년도 세입예산액은 간이상수도개·보수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지원된 것이기 때문임.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예산액	2005년도 예산안	증 감	
			증 감 액	비율(%)
일반회계	1,047,757	4,992,640	3,944,883	376.5

- ① 공기업회계 자본전출 상수도 2,819,324천원, 하수도 1,232,740천원(p423)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익자부담과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운영하는 것으로 2004년도에는 특별회계로의 자본전출이 없던 것을 2005년부터 공기업회계로 운영하면서 상수도 및 하수도의 공기업의 운영에 따른 사업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하수도 공기업예산편성 현황을 검토할 때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2. 상수도지방공기업

### ○ 수지분석

(단위 : 천원)

수 입			과 목	지 출			비고 (A-B)
전년도	2005(A)	증감율		전년도	2005(B)	증감율	
6,633,686	4,817,009	△27.4	계	6,633,686	4,817,009	△31.1	0
2,010,356	1,847,773	△8.1	영 업	1,636,988	2,264,209	38.3	△416,436
0	2,828,636	-	영업외	86,220	75,300	△12.7	2,753,336
4,623,330	140,600	△97.0	자본적	4,686,765	2,427,500	△51.9	△2,286,900
-	-	-	예비비	223,713	50,000	△77.6	△50,000

① 상수도공기업회계에 대하여 전년도에 없던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28억 2,863만원이 계상되었음에도 예산규모가 전년보다 27.4% 감소한 사유는 거창취수장현대화 사업과 위천지방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지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임.

#### ② 영업이익 감액 편성사유 설명요구(p27)

- 급수수익중 일반용은 증가한데 비하여 가정용 80천만원, 대중탕용은 85백만 각각 감소된 것으로 편성되었는 바,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③ 일반회계 전입금 2,819,324천원(p30)

- 전년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이 없이도 특별회계를 운용 하였음에도 28억원의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던 직원들의 인건비(10억 2천만원)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하여 그 동안 확보치 못하였던 군비 부담금재원확보를 위한 것임.

상수도지방공기업은 수돗물공급의 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이 없는 상태로서, 위 수지분석표에서와 같이 일반회계 지원이 없으면 상수도 확장 및 유지보수는 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앞으로도 노후관교체와 상수도확장공사, 현대화 등의 사업운용을 위하여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정액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됨.

#### ④ 성과상여금 31,717천원(p39)

-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공기업에 편성하였으나, 성과평가는 군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과에서 일괄평가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이중계상된 것으로 삭감처리 하여야 할 것임.

### 3. 하수도지방공기업

#### ○ 수지분석

(단위 : 천원)

수 입			과 목	지 출			비고 (A-B)
전년도	2005(A)	증감율		전년도	2005(B)	증감율	
6,848,800	8,476,391	23.7	계	6,848,800	8,476,391	△31.1	0
503,375	481,151	△8.1	영 업	1,072,498	1,645,743	38.3	△1,164,592
2,153,800	1,232,740	-	영업외	23,200	14,660	△12.7	1,232,740
4,477,273	6,762,500	△97.0	자본잉여금				6,762,500
			가동설비자산	5,409,189	3,431,625		△3,431,625
			비가동비자산	0	3,212,563		△3,212,563
			고정부채상환	31,800	31,800		△31,800
			기타자본적지출	206,684	40,000		△40,000
-	-		예비비	105,429	100,000	△77.6	△100,00

① 하수도공기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은 국고보조금과 환경기초시설 및 운영비에 대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상수도공기업과 달리 하수도공기업은 영업수입이 지출에 크게 모자람에도 일반회계 전출금이 상수도공기업 전출금(28억 19백만원)보다 많이 적으며, 오히려 전년도의 21억 5,380만원에 비하여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② 성과상여금 5,792천원(p33)

-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공기업에 편성하였으나, 성과평가는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행정과에서 일괄평가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도 예산이 편성 되어 이중계상된 것으로 삭감처리 하여야 할 것임.

#### ③ 합천댐상류확충사업(19개소) 2,906,357천원(p49)

- 사업시행과 관련한 읍면별, 사업별 세부내역서 제출 요구

(의원별 자료배부)